

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-7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10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,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 변경 「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」로 개정
- 나.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
- 다.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
- 라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(식품진흥기금)
- 행정안전부 「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
- 국민권익위원회 「2012부패영향평가지침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3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3. 8. 29 ~ 9. 18. (제출의견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위원의 연임가능 횟수 제한 명시 권고

○ 권고안 반영 : 제6조제3항 수정

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: 원안동의

라. '13년 제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'13.10.10)

마.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소 위생과 김창진
연 락 처	02-3153-9086

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”로 한다.

제1장의 제목 “총 칙”을 “총칙”으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영업자”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”을 ““영업자”란 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제1항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”으로, “제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1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모범음식점”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”을 ““모범음식점”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시설개선자금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시설개선자금”이란”으로, “소유되는”을 “소요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모범음식점 육성자금”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”를

“모범음식점 육성자금”이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“대하”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82조, 제83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

제3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융자사업”을 “융자 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활동지원”을 “활동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조사·연구사업”을 “조사·연구 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좋은식단”을 “좋은 식단”으로, “사업지원”을 “사업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

제4조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사업으로써 영 제42조”를 “사업으로서 영 제61조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보건소장”을 “위생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위생과장”을 “식품위생팀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방재정법의 회계관

제공무원의 책임중”을 “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「지방재정법」 과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을 준용하되”로, “기금운용관에게”를 “기금운용관에게,”로, “각각 이를”을 “각각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 식품진흥기금”을 “그 밖에 기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하여 10인”을 “1명을 포함하여 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”로,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, “전임자의 잔임”을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가진 자”를 “가진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위생과 기금관련”을 “기금업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제1항 내지 제6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6항까지”로 한다.

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 중 “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조제1호에 따라”로, “용자사

업”을 “용자 사업”으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”을 “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용자대상 여부와 그 우선순위는 접수된 용자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고, 현장확인”을 “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 확인”으로, “결정하되”를 “용자대상 적격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되,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용자에 관하여”를 “용자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대하에 필요한 구와 금융기관 간의 권리·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부정·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”을 “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부정·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)”을 “(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제4조제6호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영 제63조에 따른다.

제13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 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총 칙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식품위생 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 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 포구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 금”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 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영업자”라 함은 법 제21 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 는 자를 말한다.</p> <p>2. “모범음식점”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총칙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식품위 생법」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 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 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영업자”란 「식품위생 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제1항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----- -- 제21조에 따른 ----- -----.</p> <p>2. “모범음식점”이란 법 제47 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</p>

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이 모범 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.

3. “시설개선자금”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, 개·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유되는 자금을 말한다.

4. “모범음식점 육성자금” 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.

5. “대하” 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 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

2.·3. (생략)

마포구청장-----

-----.

3. “시설개선자금” 이란 ----

----- 소요되는
-----.

4. “모범음식점 육성자금” 이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-----

-----.

5. “대하” 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-----
-----.

1. 법 제82조, 제83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

2.·3. (현행과 같음)

4. 기타 영이 정하는 수입금 등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
2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
3.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4. (생략)
5.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
6. 부정·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
7.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생략)

②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으로

4. 그 밖에 -----

제4조(기금의 용도) -----
각 호-----.

1. -----
----- 용자사업
2. -----

- 활동 지원
3. -----
--- 조사·연구 사업
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좋은식단 ----- 사업 지원
6.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
7. 그 밖에 -----
----- 사업으로써 영 제61조-----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

로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보건소장

2. 기금출납원 : 위생과장

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

④ (생략)

제6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~ 3. (생략)

4.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

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

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.

1. ----- 위생과장

2. ----- 식품위생팀장

③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「지방재정법」과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되 ----- 기금운용관에게, -----

----- 각각 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 ----- 각호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기금-----

②----- 1명을 포함하여 10명 -----

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1.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

2. ~ 4. (생략)

④심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위생과 기금관련 담당팀장이 된다.

⑤ (생략)

⑥심의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----.

③-----

-----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

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--

----- 한 차례만 연임-----

----- 전임위원

임기의 남은 -----.

1. -----

----- 가

진 사람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-----

----- 1명-----

- 기금업무 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-----

----- 범위-----

-----.

-----.

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7조(용자계획 공고)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자총액·용자한도·용자조건·용자절차 등의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용자대상) 기금의 용자대상은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-----

-----.

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(용자계획 공고) -----
제4조제1호에 따라 -----

----- 용자 사업 -----

-----.

제8조(용자대상) -----
--- 서울특별시 마포구-----

“구”라 한다) 관할지역 안의
영업자로 한다. 다만, 단란주점
· 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
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
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
용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용자신청 및 대상선정) ①
(생략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용자
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
자대상 여부와 그 우선순위는
접수된 용자신청의 내용을 검토
하고,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결
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
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
다.

제10조(용자한도 및 조건 등) ①
(생략)

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
육성자금의 용자금리, 용자조
건, 용자절차 등 용자에 관하여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
다.

제11조(용자금 대하) ① (생략)

----- 그 밖에

제9조(용자신청 및 대상선정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----

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 확인 -
----- 용자대상 적격 여부
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되, ----

제10조(용자한도 및 조건 등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용자에 -----

제11조(용자금 대하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하에 있어서 구와 금융기관간의 권리·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
제4장 부정·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

제12조(부정·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) ① 부정·불량식품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30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·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대하에 필요한 구와 금융기관간의 권리·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
제4장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

제12조(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) ① 제4조제6호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영 제63조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
-----.